

의안번호	2218358
의 퇴 인	배준영 의원
회 답 일	2026. 7. 10.
추계번호	26A2212

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른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 1억 2,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2,000만원(연평균 2,4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6조)	120	—	—	—	—	120	24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의 효율적 비축 및 해외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. 이 경우 국내외 전략광물 수급 동향, 가격 등 환경 변화로 기본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전략광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7조(전략광물비축 및 해외개발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)	○ 전략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전략광물비축및해외개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(제1항) －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－ 2. 전략광물과 관련된 기술·예산·자금·인력 등 규제·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 전략·정책에 관한 사항 － 3. 전략광물 수급위기 진단·평가에 관한 사항 － 4. 전략광물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－ 5. 제2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의 관리·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－ 6. 그 밖에 전략광물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	의무규정
3	안 제9조(국제협력)	○ 정부는 전략광물의 비축 및 해외개발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－ 1.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－ 2.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관련 해외 정보의 수집·분석을 위한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정보교환 － 3.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관련 공동 정책 조사·연구 등 국제협력 － 4.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관련 공동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국제협력 － 5. 그 밖에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재량규정
4	안 제11조(비축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전략광물을 비축하여야 함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략광물 비축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5	안 제12조(비축계획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광물 비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광물 비축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비축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6	안 제13조(민관공동비축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공동비축사업(이하 “민관공동비축사업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략광물의 민관공동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(제3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관공동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「국유재산법」 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의 특성, 비축물량, 비축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(제4항)	
7	안 제15조(국내기업의 해외개발 전략광물 우선 구매)	○ 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개발한 전략광물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의 국제 가격이 급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략광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내기업이 해외개발한 전략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비축할 수 있음(제2항) ○ 제2항에 따른 구매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수행할 수 있으며,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예산 또는 제23조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8	안 제17조(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보조·융자)	○ 정부는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에 드는 비용 － 2.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－ 3.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－ 4. 그 밖에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○ 정부는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및 개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- 2.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- 3.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- 4. 그 밖에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○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용자받은 해외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용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(제3항)	
9	안 제18조(조세에 대한 특례)	○ 국가는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자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·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19조(투자위험보증사업)	○ ① 정부는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해외자원개발 사업법」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투자위험보증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투자위험보증사업”이라 한다)을 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 ○ 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1	안 제20조(손실지원)	○ 정부는 해외개발사업자가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2	안 제22조(보고 및 검사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전략광물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장부·서류·물건과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3	안 제23조(특별회계의 설치 등)	○ 전략광물의 비축 및 해외개발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함(제1항) ○ 특별회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·운용함(제2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항)	
14	안 제24조(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)	○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음(제1항) － 1. 정부 출연금 － 2. 차입금 － 3. 전략광물 판매 수익금 － 4.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자로 인한 수입금 － 5. 그 밖의 수입금 ○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함(제2항) － 1.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사업 지원 － 2.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－ 3. 특별회계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자금 －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	의무규정
15	안 제29조(기금의 설치)	○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전략광물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전략광물의 수급 및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함	의무규정
16	안 제30조(기금의 재원)	○ 기금은 정부 출연금, 특별회계 전입금, 투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구성함	의무규정
17	안 제31조(기금의 용도)	○ 기금은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지분투자, 해외개발, 긴급 비축 확대 및 그 밖의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비축 및 해외개발사업의 지원에 사용함	의무규정
18	안 제32조(기금의 관리 · 운용)	○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·운용함(제1항)	의무규정
19	안 제33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	○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.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												
1	안 제6조(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	—												
2	안 제7조(전략광물비축및해외개발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)	—	○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)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므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												
3	안 제9조(국제협력)	X	○ 현재 산업통상부는 자원협력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자원협력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하고 있음 — 다만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(단위: 백만원) <table> <tr> <th></th><th>2024결산</th><th>2025결산</th><th>2026예산</th></tr> <tr> <td>자원협력기반구축</td><td>483</td><td>460</td><td>567</td></tr> </table>		2024결산	2025결산	2026예산	자원협력기반구축	483	460	567				
	2024결산	2025결산	2026예산												
자원협력기반구축	483	460	567												
4	안 제11조(비축)	X	○ 현재 산업통상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,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등을 통해 전략광물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— 다만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(단위: 백만원) <table> <tr> <th></th><th>2024결산</th><th>2025결산</th><th>2026예산</th></tr> <tr> <td>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</td><td>251,762</td><td>415,447</td><td>82,929</td></tr> <tr> <td>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</td><td>1,052</td><td>1,052</td><td>1,352</td></tr> </table>		2024결산	2025결산	2026예산	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	251,762	415,447	82,929	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	1,052	1,052	1,352
	2024결산	2025결산	2026예산												
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	251,762	415,447	82,929												
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	1,052	1,052	1,352												
5	안 제12조(비축계획)	—	○ 안 제12조의 비축계획은 안 제6조의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— 참고로,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전략광물의 비축일수는 평균 84.9일임 (단위: 일) <table> <tr> <th></th><th>2023</th><th>2024</th><th>2025</th></tr> <tr> <td>비축일수</td><td>51.2</td><td>59.9</td><td>84.9</td></tr> </table>		2023	2024	2025	비축일수	51.2	59.9	84.9				
	2023	2024	2025												
비축일수	51.2	59.9	84.9										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												
6	안 제13조(민관공동비축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												
7	안 제15조(국내기업의 해외개발 전략광물 우선 구매)	X													
8	안 제17조(전략광물 해외개발 사업의 보조·융자)	X	○ 현재 산업통상부는 해외자원개발조사,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등을 통해 해외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－ 다만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(단위: 백만원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</th><th>2024결산</th><th>2025결산</th><th>2026예산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해외자원개발조사</td><td>3,291</td><td>4,674</td><td>3,705</td></tr> <tr> <td>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</td><td>39,817</td><td>39,000</td><td>67,517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2024결산	2025결산	2026예산	해외자원개발조사	3,291	4,674	3,705	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	39,817	39,000	67,517
	2024결산	2025결산	2026예산												
해외자원개발조사	3,291	4,674	3,705												
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	39,817	39,000	67,517												
9	안 제18조(조세에 대한 특례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												
10	안 제19조(투자위험보증사업)	X													
11	안 제20조(손실지원)	X													
12	안 제22조(보고 및 검사)	X													
13	안 제23조(특별회계의 설치 등)	X													
14	안 제24조(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)	X													
15	안 제29조(기금의 설치)	X													
16	안 제30조(기금의 재원)														
17	안 제31조(기금의 용도)														
18	안 제32조(기금의 관리·운영)	X													
19	안 제33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	X											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“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”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통상부는 다양한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,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신규 사업의 수행 또는 현행 사업의 확대 정도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제정안의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6조)

- 안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마다 “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본계획”을 수립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이때 비용추계 대상은 “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”로 하며, 5년마다 수립하므로 추계기간 중 2027년에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－ 안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시행계획은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유사 연구용역의 사례를 참고할 때 2027년에 1억 2,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유사 연구용역 사례로는 “탄소중립 달성을 위한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연구”(산업통상부, 2022년, 6,000만원), “해외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”(산업통상부, 2016년, 2억원), “해외자원개발 금속자원의 국내비축 및 유통방안 연구”(조달청, 2014년, 9,667만원) 등이 있음

[표 2]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6조)	120	—	—	—	—	1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